

##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2. 12. 20.

산업건설위원회

### 1. 심사경위

- 가. 제출일자 : 2002. 12. 5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12. 6
- 라. 상정일자 : 2002. 12. 20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하수처리 원가가 상승하여 현실화율이 15.8%로 톤당 888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 재정의 적자가 계속 누적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불합리한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선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65%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사용구간을 2~6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조정(안 별표 1, 별표 1-1)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하수처리 생산원가의 인상요인 증가로 인하여 저렴한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도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돗물 소비증가로 수질 오염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하수관거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며, 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와 수자원을 보전하고 사용요금 체계 개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하수처리 원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01년말 현재 톤당 1,054원으로 상승하여 현실화율이 15.8%로 톤당 888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의 연차적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충남도내 하수도 사용요금 2002. 11월말 평균이 원가대비 22.3% 수준이며 우리시는 원가대비 26% 수준과 현행 요금의 평균 65%를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재정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2006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목표하고 현행 6개 업종의 요금체계를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사용구간을 2~5개 구간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개정되는 조례안에 있어서 서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2002. 8. 16)에서 인상안 가결과 서산시 공고 제38호(2002. 10. 10)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조례안으로서
-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빈약한 하수도 재정을 개선하고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 주민들에 대한 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하수시설 투자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여야하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처리원가의 26%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문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년월일 : 2002. 12. 5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과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65%인상하고 요금체계를 현행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폐합, 사용구간을 2~6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조정 (안 별표1, 별표1-1)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나. 상하수도요금 체계 개선 지침(2001. 6 , 2002. 4. 행정자치부)

다.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2. 8. 16.) : 인상안 가결.

라. 예산조치

마. 관련사업계획서

바.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없음

사. 승인, 인가, 보고등 관련서류 : 별첨

아. 준칙안(표준안)등 : 없음

#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하수도 사용요금표

업종별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20</li> <li>· 21 ~ 30</li> <li>· 31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5</li> <li>300</li> <li>485</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50</li> <li>· 51 ~ 100</li> <li>· 101 ~ 300</li> <li>· 301 ~ 500</li> <li>· 501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0</li> <li>540</li> <li>710</li> <li>940</li> <li>1,020</li> </ul>
대 중 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500</li> <li>· 501 ~ 1,000</li> <li>· 1,001 ~ 1,500</li> <li>· 1,501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5</li> <li>480</li> <li>720</li> <li>750</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구간적용</li> </ul>	330

## (별표 1-1) 업종 구분표

업종별	업태명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사업, 수예점, 만화점, 구멍가게등</li> <li>·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li> </ul>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li> <li>· 시설소화전                      · 관공서, 병원                      · 학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li> <li>·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li> <li>· 식품 접객업                      · 공연장</li> <li>· 숙박업                              · 유기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li> <li>·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관광업</li> <li>· 예식장                              · 시설학원</li> <li>· 사진현상소                      · 양조업</li> <li>·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li> <li>· 체육시설업</li>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구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li> <li>· 특수목욕장업</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 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욕장업</li> </ul>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li> </ul>

[별표 1] 하수도 사용요금표 (당초)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1~10	119
		11~20	143
		21~30	178
		31~40	226
		41~50	297
		51 이상	369
업 무 용		1~20	132
		21~50	172
		51~100	251
		101~300	330
		301이상	409
영 업 용		1~30	211
		31~50	274
		51~100	400
		101~500	526
		501이상	653
목 탕 용	1 종	1~500	170
		501~700	230
		701~1000	327
		1001이상	422
	2 종	1~200	260
		201~300	280
		301~500	330
		501 이상	440
산 업 용		1m <sup>3</sup> 당	120

[별표 1] 하수도 사용요금표 (개정)

업종별	구 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 1 ~ 20	215
		· 21 ~ 30	300
		· 31 이상	485
일 반 용		· 1 ~ 50	310
		· 51 ~ 100	540
		· 101 ~ 300	710
		· 301 ~ 500	940
		· 501 이상	1,020
대 중 탕 용		· 1 ~ 500	285
		· 501 ~ 1,000	480
		· 1,001 ~ 1,500	720
		· 1,501 이상	750
산 업 용		· 단일구간적용	330

## (별표 1-1) 업종구분표 (당초)

업종별	업태명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기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li> <li>· 신문보급소, 신채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li> <li>·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li> </ul>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소화전                      · 학교                                      · 정당</li> <li>·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li> <li>·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li> <li>·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li> <li>· 병영                                      · 신문사, 방송국</li> <li>·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li> <li>·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li> <li>·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li> <li>·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 </ul>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li> <li>·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li> <li>·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li> <li>· 사진현상소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li> <li>·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상장업 제외)</li> <li>·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li> <li>·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li> <li>· 화해, 식목업</li> <li>·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오피스텔</li> <li>· 도살장, 정육업</li> </ul>

업종별	업태명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li> <li>·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li> <li>·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li> <li>·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li> <li>· 단기급수통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li> <li>·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함)</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li> </ul>	
욕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ul>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li> </ul>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li>· 두레 재배업소</li> </ul>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별표 1-1) 업종구분표 (개정)

업종별	업    래    명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점, 구멍가게등</li> <li>·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li> <li>· 시설소화전                      · 관공서, 병원                      · 학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li> <li>·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및 지사무소</li> <li>· 식품 접객업                      · 공연장</li> <li>· 숙박업                              · 유기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li> <li>·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관광업</li> <li>· 음식점                              · 사설학원</li> <li>· 사진현상소                        · 양조업</li> <li>·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li> <li>· 채육시설업</li> <li>· 단기급수용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구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짐하는 업체</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li> <li>· 특수목욕장업</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 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li> </ul>
대 중 량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욕장업</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li> </ul>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공고 제2002 - 386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0. 10.

## 서 산 시 장

### 1. 조례명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 2. 개정취지

19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의 16%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업종간, 사용구간간 요금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하수도 요금을 현행 생산원가의 16%수준에서 26%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업종통합 및 사용구간의 요금요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코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평균요금을 현행 167원에서 275원으로 인상(안 제10조 제2항)
- 나. 업무용, 영업용, 육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 및 사용구간을 1~6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제고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2. 10. 29일까지 서산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41-660-252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명시
- 기타 참고사항 등